

# 특별공급 (노부모부양)

## ■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기준

구분	내용								
대상 및 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『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』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(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)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(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.)</li> </ul> <p>※ 단,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</li> <li>- 세대주일 것</li> </ul>								
유의사항	<p>※ 무주택 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, 피부양자(노부모)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「(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」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)</p> <p>※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</p> <p>※ 만 60 세 이상의 직계존속(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)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</p> <p>※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(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『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』제 28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)</p>								
당첨자 선정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당첨자 선정 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(부산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) 거주자가 우선함.</li> <li>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,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.</li> <li>-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'청약가점 산정기준(『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』별표1)'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.</li> <li>-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,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,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.</li> <li>-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(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)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,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,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</li> </ul> </li> </ul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<th>무주택기간</th><th>부양가족수</th><th>청약통장 가입기간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배점</td><td>최저 : 2점 (1년미만) 최대 : 32점 (15년 이상)</td><td>최저 : 5점 (0명) 최대 : 35점 (6명)</td><td>최저 : 1점 (6개월 미만) 최대 : 17점 (15년 이상)</td>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</p>	구분	무주택기간	부양가족수	청약통장 가입기간	배점	최저 : 2점 (1년미만) 최대 : 32점 (15년 이상)	최저 : 5점 (0명) 최대 : 35점 (6명)	최저 : 1점 (6개월 미만) 최대 : 17점 (15년 이상)
구분	무주택기간	부양가족수	청약통장 가입기간						
배점	최저 : 2점 (1년미만) 최대 : 32점 (15년 이상)	최저 : 5점 (0명) 최대 : 35점 (6명)	최저 : 1점 (6개월 미만) 최대 : 17점 (15년 이상)						

※ 본 서식은 인쇄 및 편집 과정에서 오타가 있을수 있으며, 혼돈을 야기하는 경우 사업주체의 질의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